서울특별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 대한 수정안

의 안 관련 번호 847 제안년월일 : 2023년 6월 28일

제 안 자 : 문화체육관광위원장

1. 수정이유

○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사업으로 생활체육지도자 임금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자 하나 임금, 정원 등은 매년 문체부에서 지정·통보하고 있 어 불필요함.

2. 수정의 주요 내용

가. 생활체육지도자 임금가이드라인 수립을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함 (안 제7조제4항).

서울특별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인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7조제4호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제4호로 한다.

< 수정안 조문대비표 >

제 정 안	수 정 안
제7조(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사업) 시장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를 개 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	제7조(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사업) (제정안과 같음)
1.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지 위 향상을 위한 조사·연구 사업 2. 생활체육지도자의 역량 강화를 위 한 교육 및 훈련지원 사업 3. 생활체육회 종사자 간 임금과 노 동조건 차별 개선사업	1. ~ 3. (제정안과 같음)
4. 생활체육지도자 임금가이드라인 수립	<삭 제>
5. 그 밖에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 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업	4. (제정안 제5호와 같음)

서울특별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에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체육의 진흥과 서울특별시민의 체육활동 활 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스포츠클럽"이란 주사무소가 서울특별시에 있고 회원의 정기적인 생활체육 활동을 위하여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.
- 2. "생활체육지도자"란「국민체육진흥법」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생활체육 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배치된 사람을 말한다.
- 제3조(시장의 책무) 서울특별시(이하 "시장"라 한다)는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지원과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- 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제5조(스포츠클럽 지원 사업) 시장은 스포츠클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- 1.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 위탁
- 2. 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 지원
- 3. 스포츠클럽의 설립 및 등록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
- 4. 그 밖에 스포츠클럽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- 제6조(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사업) 시장은 생활체육지도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 - 1. 생활체육지도자 전문성 강화 지원 사업
 - 2. 생활체육대회 참여 지원 사업
 - 3. 우수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포상
 - 4. 그 밖에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제7조(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사업) 시장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를 개선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 - 1.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·연구 사업
 - 2. 생활체육지도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지원 사업
 - 3. 생활체육회 종사자 간 임금과 노동조건 차별 개선사업
 - 4. 그 밖에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- 제8조(생활체육지도자 실태조사 등) ① 시장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추진할 수 있다.
 -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추진하는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

에 위탁할 수 있다.

- ③ 시장은 실태조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체육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- 제9조(지원) ① 시장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·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절차 및 방법 등은 「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- 제10조(위탁)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육관련 법인·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「서울특별시 민간위탁 조례」에 따른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